

2010. 11. 16.

조례안 심사 보고서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안전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비고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 11.4.	2010. 11.5.	2010. 11.10.	2010. 11.10.	지역개발 과장	

2. 제안설명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연접개발제한,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등의 사항을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고 일반 및 준공업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확대(안 제20조의 2 신설)
- 나.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안 제20조의 3 신설)
- 다. 일반 및 준공업지역의 건폐율 완화(60%이하→70%이하)
(안 제54조)

라. 일반 및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완화(일반공업지역 350%이하, 준공업지역 400%이하로 상향 조정)
(안 제59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건축완화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유치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연접개발제한의 완화와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 지역내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가. 연접개발제한의 완화

연접개발제한제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적 개발행위의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수차례 결친 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제한하는 제도임

개정 조례안 제20조의2 제1항에서는 연접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을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란

주점, 안마시술소 등을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여 개발을 완화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 건축물을 정하고 있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고 있음.

조례안 제20조의 3에서는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를 통하여 연접개발 제한을 완화하고 있음. 연접개발제한 지역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런 지역에서 연접개발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동안 공장 등이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 입지하여 국토경관을 훼손하거나 투기적 목적의 개발 선점으로 실수요자가 공장 등의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부작용이 있었던 실정임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를 통한 연접제한에 관계없이 공장 증축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기업 투자의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공업지역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현재 충주시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은 213개(산업단지 157, 농공단지에 56) 업체임. 이들 기업 중 조례 개정으로 건폐율을 완화할 경우 충주제2산업단지에 위치

하고 있는 54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충주 제 1, 2, 3산업단지와 첨단, 중원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157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임.

다.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반영한 연접개발제한을 완화하는 내용과 공업 지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기대되고 공장 및 건물에 대한 신·증축으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투자유치 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됨

5. 질의답변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